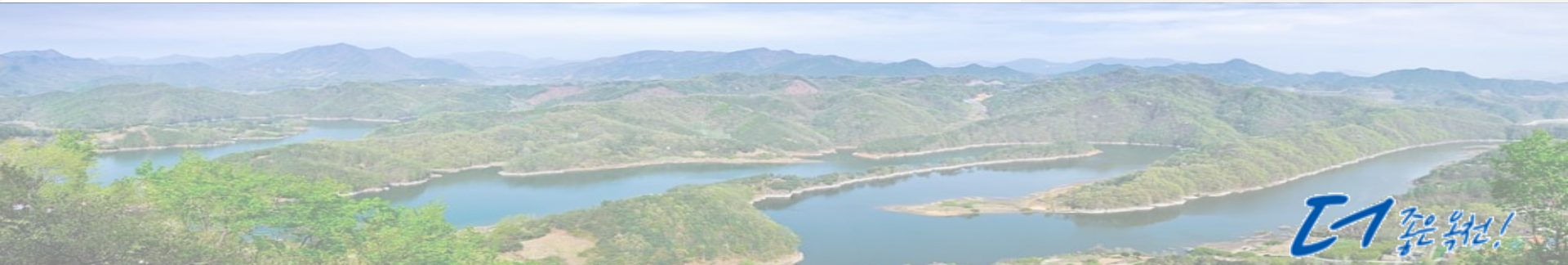


✓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민·관 협력으로

금강수계 ‘매수토지 범위 및 사용허가 규제’ 혁신

옥천군 이충하





민·관 협력으로

금강수계
'매수토지 범위 및 사용허가 규제' 혁신

1 연황 및 문제점

2 규제개혁 추진과정

3 규제개혁 추진성과

4 활용 방안

1 연왕 및 문제점

✓옥천군의 개발 규제지역

1 수 변 구 역

2 특 대 지 역

3 자연환경보전지역

4 개발제한구역

전체면적의

83.8%

민·관 협력으로

금강수계

'매수토지 범위 및 사용허가 규제' 혁신

1 연왕 및 문제점

옥천군 전체면적의

51.9%가

매수대상

매수 근거

금강수계법 시행규칙 제9조

금강본류 경계로 부터 **3km**

제1지류 경계로 부터 **1.5km**

옥천군 면적 537.1 km^2 중

환경부 **매수대상** 면적

279.2km^2

좋은 옥천!

민·관 협력으로

금강수계

'매수토지 범위 및 사용허가 규제' 혁신

옥천신문 2017년 09월 08일

옥천땅 절반 '불모지' 되는 건 시간문제

금강유역환경청, 토지매수 사업계획 '상상초월'
옥천땅 279.2㎢ 매입계획, 옥천 면적(537.1㎢)의 51.9%
현재 92만평(305만㎡) 1.2%만 매입 완료

지난해 12월 벌어진 하천구역편입 논란은 '
중이라 충격을 주고 있다. 279.2㎢는 옥천군 전
경청에 매수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점차 늘어
나고 있다. 수계기금 중 토지매수 사업 예산이
해마다 170억가량 책정돼있어 옥천땅이 점차 '
사람도 살 수 없을 뿐 더러 시설물 하나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땅'으로
잠식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다.

당초 하천구역 편입 논란은 26.09㎢가 하천구
역으로 편입돼 6개 읍면 땅주인의 즉각적인 반
발을 불러일으켰지만, 금강유역환경청의 토지매
수는 2003년부터 이미 시작됐고, 그 대상 면적이
하천구역 편입면적의 10배 이상이다.

이 법의 [illegible] 규정에 따라 [illegible]의 매수대상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
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공고된지
[illegible] 지역', '
별대책지역 중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
터 이내의 지역 또는 제1지류의 경계로부터 1.5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그 밖에 위원회가 금
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으로 돼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청댐 상류 10개 시군구
(전북 진안, 무주, 장수, 충북 보은, 옥천, 영동,
청주, 충남 금산, 대전 동구, 대덕구)의 1천110
㎢가 토지매수 대상지역으로 현재 1.2%의 매수
율을 보이고 있고, 옥천군은 279.2㎢가 매수계
[illegible]

문제는 옥천군이 여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옥천군은 금강유역환경청이
토지 매수를 얼마나 했는지도 모를 뿐더러 매수
계획 자체가 어느정도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군 환경과 수계관리팀 육종희 팀장은 "금강
유역환경청에서 옥천군에 아무런 정보 공유없
이 매매절차를 직접 하는 땅이라 현황을 잘 모
르고 있다"며 "토지 매입계획에 대해서도 옥천
땅 절반이나 되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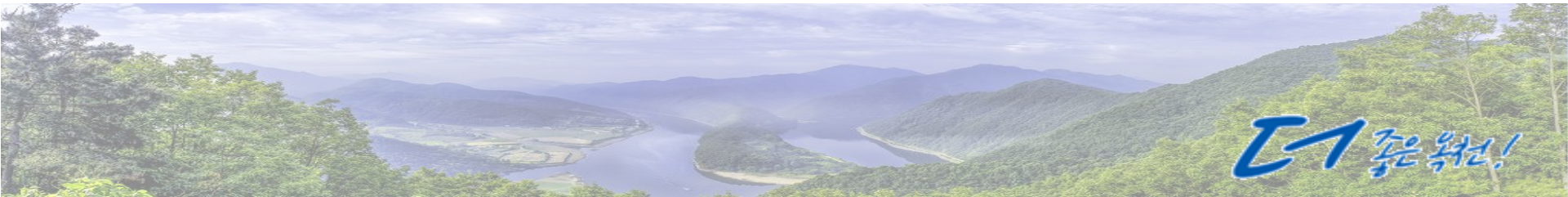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초준영 담당
[illegible] "이 사업은 '천년 사업'으로 후대에 걸쳐
[illegible]매입해야 하는 사업으로 수변생태벨트를
[illegible]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며 "
지금 매수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고 우선 순위를 [illegible]해 대청호에 안전한 토지
[illegible]
[illegible]옥천군 [illegible]부 [illegible]수대상이 되는
토지가 옥천땅 절반이 되는 줄은 처음 알았다"
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향후 대책을 논의해보
겠다"고 말했다.

황민호 minho@okinews.com

금강유역환경청, 토지매수 사업계획 '상상초월'

옥천땅 279.2 km^2 매입계획, 옥천면적(537.1 km^2)의 51.9%

현재 92만평(305만m^2)1.2%만 매입완료



1 연왕 및 문제점

2018년

✓ 금강수계 토지매수 현황(누적)



도로를 따라 집중적 매수 분포

민·관 협력으로

금강수계

'매수토지 범위 및 사용허가 규제' 혁신

2 규제개혁 추진과정

국민청원서 제출
부처: 환경부
서명인수: 9,128명
금강수계법 문제점
개선요구

청 원 서

청원인 : 옥천군이장협의회장 조규룡외 9,127명

청원인 대표자

대표자 성명	주 소	연락처
조 규 룡	옥천군 옥천읍 장야3길 10 주공A 203-1304	010-5469-3753
김 연 용	옥천군 동이면 금암3길 5-6	010-2359-2362
강 정 옥	옥천읍 문정리 동부로 16 하늘빛A 105-126	010-5451-4199

2. 청원 내용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 청원
(토지매수 사업 등 개선 청원)

「청원법」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청원합니다.

붙임 : 1. 청원이유 1부
2. 청원 사항 1부.
3. 참고자료(청원 사항 설명 자료) 1부
4. 청원인 서명부

환경부장관 귀하

금강수계 관련 문제점 개선 청원사항

1. 수변구역 해제 제한사유 폐지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 된 경우 등 수변구역 해제 제한하는 사유 폐지

2. 상수원 보호를 명분으로한 토지매입 축소

한강보다 2배나 넓은 금강수계 토지 매수범위 축소

3. 기업입지 저해하는 규제 완화

특정수질유해물질 전량위탁 처리(무방류)시 기업입지 허용

4. 상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및 협의창구 마련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신설
- 금강수계관리자문위원회 결정이행 기능 강화
  ※ 금강수계자문위원 일부를 금강수계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 자문위원회 상류기초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5. 주민지원사업비 사용 및 배분기준 조정

- 주민지원사업 사업구분 비율 폐지
  ※ 특별대책II권역 간접지원사업비 오염물질정화사업 50% 폐지
- 주민지원사업 배분액 기준 조정

EI 좋은 옥천!

2 규제개혁 추진과정

민관 TF 구성

환경단체
- ✓ 환경사랑모임
- ✓ 대청호주민연대
- ✓ 환경보전협회

지역주민
- ✓ 옥천군이장협의회
- ✓ 옥천주민차치협의회

언론
- ✓ 옥천신문사
- ✓ 향수신문사

관
- ✓ 옥천군청
- ✓ 옥천군의회
- ✓ 금강유역환경청

2 규제개혁 추진과정

✓ 금강수계 규제완화 추진방침

1 수계법 시행령 개정

2 관리지침 개정

매수 범위 축 소

활용 용도 확 대

민·관 협력으로

금강수계
'매수토지 범위 및 사용허가 규제' 혁신

2 규제개혁 추진과정







개선대책회의

회차 1~6회

2018. 1. 11.~

2018. 4. 19.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 개정 (2018.10.19.)

개정전

제31조(매수토지의 사용승인 등)

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우선매수지역 이외의 토지로서 취득한 토지 중 「금강법」 제4조의2에 따른「수변구역 관리 기본계획」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을 요청해 올 경우 금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사용승인은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사용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후

제31조(매수토지의 사용승인 등)

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우선매수지역 이외의 토지로서 취득한 토지 중 수질개선 및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사용을 요청해 올 경우 금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매수토지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후조성 및 사용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18.12.17.)

개정전

제9조(토지등의 매수대상 지역)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 2(생략)

3. 금강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이하 "제1지류"라 한다)와 인접한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가. 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제1지류의 경계로부터 **1천5백미터** 이내의 지역

나. 영 별표 4 제3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제1지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이하생략>

개정후

제9조(토지등의 매수대상 지역)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 2(생략)

3. 금강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이하 "제1지류"라 한다)와 인접한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가. 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천5백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제1지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나. 영 별표 4 제3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제1지류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내의 지역

<이하생략>

3 규제개혁 추진성과

충청투데이 2018년 10월 31일

옥천군 민·관 협력으로 '금강수계 지침' 개정

2003년 지침 제정 이후 첫 사례
오염원 차단·공익목적 사용 허가

옥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부른 금강수계 토지 매수 지침이 마침내 개정됐다.

옥천군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 4월 옥천군 토지매수대책 민·관 TF에서 도출된 세 가지 중 두 가지 합의안이 담긴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 지침이 지난 19일 최종 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금강 주변 오염원 차단과 수질보전을 위해 정부에서 매수한 토지를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을 요청해 올 경우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수질오염을 악화시키는 축사나 본류 오염원 영향을 많이 받는 하천 경계 토지의 경우 매수우선순위를 산정하는 배점을 높여 우선 매수할 수 있도

지침 개정 전에는 매수된 토지를 수질개선을 위한 용도로만 조성해 지자체 공공사업이나 주민 한 각종 공익사업 추진에 차질이 다. 뿐만 아니라, 조성된 습지 리소홀로 각종 잡초와 해충 발하며 주민생활에 막대한 해 왔다. 이런 이유를 들어 주민들이 지침 개정을 크게 기다. 현재 환경부 차원에 중인 금강수계 물관리 및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 상 토지매수범위 축소안을 제외하면 군의 민·관 TF의 건의 내용들이 모두 반영됐다는 점에도 큰 의미가 있다.

지를 정부에서 매수하도록 하고, 그 방법과 절차 등을 지침으로 정해놨다.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1권역은 한강수계보다 2배 넓은 면적인 금강 본류 3㎞와 지류 1.5㎞, 2권역은 금강 본

동양일보 2018년 12월 24일

옥천 대청호주변 토지매수범위 대폭 축소

금강수계법 '한강수계 기준'으로 완화… 절반 ↓
공익목적 사용에 이은 두번째 쾌거… 군민 '환영'

지나친 규제로 옥천지역 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대청호주변 금강수계 토지매수범위가 마침내 한강수계에 준하는 범위로 절반 축소됐다.

옥천군은 금강수계 토지매수범위 축소를 골자로 하는 환경부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 시행규칙이 지난 17일 개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금강주변 토지를 지자체들이 수질보전 목적뿐만 아니라 주민편의 등 공익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금강수계 토지매수지침' 개정에 이은 두 번째 쾌거다.

금강수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따르면 금강수계 주변지역의 상수원관리지역 중 특별대책지역 1권역은 금강본류 경계로부터 1.5㎞이내, 1지류 경계로부터 1.0㎞로 약 절반씩 축소됐다. 특별대책지역 2권역 역시 금강본류 경계로부터 1.0㎞이내, 1지류 경계로부터 0.5㎞로 각각 조정됐다.

개정 전 시행규칙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1권역은 한강수계보다 2배 넓은 면적인 금강 본류 3㎞와 지류 1.5㎞, 2권역은 금강 본류 2㎞와 지류 1㎞를 매수 대상으로 정했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옥천군은 전체 면적 537.1㎢의 51.98%인 279.2㎢가 매수지역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옥천지역 주민들은 "수질악화 우려가 없는 지역까지 토지를 매수하게 돼 입법목적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생산기반 감소, 공동화 현상 등으로 지역불균형 발전을 초래한다"며 반발해 왔다.

주민들은 이와 함께 금강수계법이 규정하고 있는 토지매수 범위축소와 사용목적 확대를 요구하는 주민청원 등을 통해 불합리한 법 개정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옥천주민과 옥천군·군의회·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옥천군 토지매수대책 민·관 TF'를 꾸렸으며 지난 4월 금강수계법 등 개정 합의문을 도출해 환경부에 건의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금강수계 주변 지역의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하천과 가까운 지역의 토지매입에 집중할 수 있어 상수원 수질보호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군 존립기반 약화 우려를 들어 반발해왔던 옥천군이나 토지매수제도를 줄곧 반대해왔던 군민들 모두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구감소와 개발가능 토지부재 등의 악영향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지난 10월 금강수계 토지매수지침 개정에 이어 이번 금강수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청댐 주변 토지에 대한 규제들이 하나 둘씩 완화돼가고 있다"며 "옥천군 토지매수대책 민·관 TF의 건의 내용들이 모두 반영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옥천 이중억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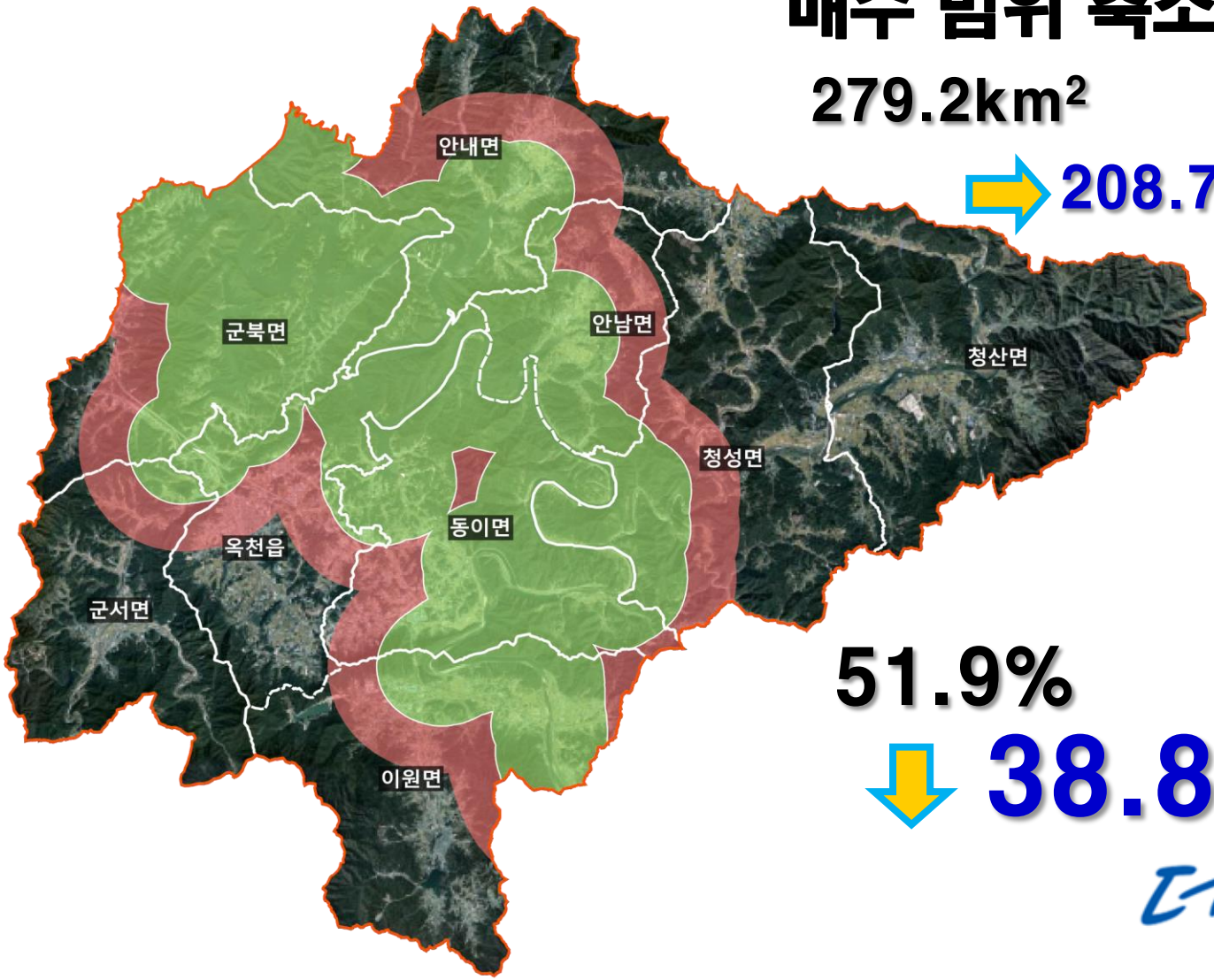
좋은 옥천!

민·관 협력으로

금강수계

'매수토지 범위 및 사용허가 규제' 혁신

❸ 규제개혁 추진성과



매수 범위 축소

279.2km²

⇨ 208.7km²

51.9%

⇩ 38.8%

좋은 옥천!



녹색 공원



잔디광장

매수토지 공적 활용방안

놀이터



쌈지공원





민·관 협력으로

금강수계

'매수토지 범위 및 사용허가 규제' 혁신

감 사 합 니 다

